

1. 개정이유

2020. 10. 20.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21. 1. 21. 시행 예정)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,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,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,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제2조제2항, 제6조, 제11조, 제15조제1항제1호)
- 나. 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 완료, 별도 의견 없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11. 26. ~ 1. 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관련 사항 없음

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”를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”으로, “양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”을 “양성, 수사절차 참여 및 배치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법 제35조·제36조”를 “법 제35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, 제36조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)”를 “(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35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제11조제1항”을 “법 제35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장(제22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진술조력인의 배치

제22조(진술조력인의 배치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성된 진술조력인을 각 지역에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의 운영을 범죄피

해자 지원,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 및 제36조(「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, <u>양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 -----		
제2조(적용 범위 등) ① (생략)		제2조(적용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이 규칙에서 <u>법 제35조·제36조 또는 제3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.</u>		② ----- 법 제35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, 제36조 -----		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</u>		<삭 제>		
1. <u>피성년후견</u>				
2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</u>				

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
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

상 성범죄

다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
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
죄

6. 제11조제1항(이 조 제1호에
해당하게 되어 제11조제1항제
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
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
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
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
한 사람

제11조(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)

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
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
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
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
드러난 경우

2.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
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
우

제11조(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

납) <삭 제>

3. 법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6.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(疏明)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

<삭 제>

<삭 제>

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
에는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
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
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
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
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
터 15일 이내에 진술조력인 자
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
여야 한다.

제15조(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)
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
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
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
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

2. ~ 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삭제>

⑤ 법 제35조의3제1항-----

-----.

제15조(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)

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법 제35조의3제1항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진술조력인의 배치

제22조(진술조력인의 배치) ① 법

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성된 진술조력인을 각 지역에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,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